

교통안전지도사 1급

강병찬 강사



01장 -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 I

1. 학습목표

- 1)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 운전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
- 2)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3)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 법규를 적용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총칙(제1장)

1)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도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제3조)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들”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3. 보행자의 통행방법(제2장)

1) 보행자의 통행(제8조)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로의 횡단(제10조)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1조)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12조)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 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 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 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제3장)

1) 차마의 통행(제13조)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 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등은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제13조의 2)

- 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아니 된다.

⑥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제14조의 2)

① 시 · 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 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 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자전거 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4)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17조)

①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 · 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 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 · 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

거나 최저속도 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 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횡단 등의 금지(제18조)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6) 안전거리 확보 등(제19조)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진로 양보의 의무(제20조)

-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02강 -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Ⅱ

8) 앞지르기 방법 등(제21조)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2조)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0) 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불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11)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제25조의 2)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6조)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3) 보행자의 보호(제27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4)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제28조)

①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

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5) 보행자 우선도로(제28조의 2)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6)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29조)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 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제31조)

1.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8)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야 하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 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 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19) 주차금지의 장소(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 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0)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제34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시간과 금지 사

항 등을 지켜야 한다.

21)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제34조의 3)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차의 신호(제38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정비 불량 차의 운전 금지(제40조)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 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03강 -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 III

5.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제4장)

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 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49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뒤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 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

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 1항 제3호 및 제4 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 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51조)

-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한다.

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제53조)

-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지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 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

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53조의 3)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제53조의 4)

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 사고발생 시의 조치(제54조)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②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신고한 운전자 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6.도로의 사용(제6장)

1)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등(제68조)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7.운전면허(제8장)

1) 운전면허(제80조)

①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시속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종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보통연습면허

04강 – 등·하교 시 보행안전

1. 학습목표

- 1)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설명할 수 있다.
- 2)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한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 3) 안전한 통학로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방법과 위험 지역을 피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2. 보행자가 지켜야 할 기본 교통법규

- 1)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사고
 - 등교길보다 하교길에서 더 많이 발생
- 2) 횡단보도 이용하기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멈춘 뒤 좌우를 살피면 후 우측으로 건너기
 -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에 건너기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 건너기
 - 눈 맞추기: 운전자와 눈을 맞춰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하기
 - 손들기: 건널 때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신호 보내기
 - 무단횡단 금지: 보행자 횡단 사고 중 무단횡단 사망자 34.8%
- 3) 인도와 차도 구분하기
 - 인도가 있는 곳: 반드시 인도를 이용
 - 인도가 없는 곳: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기
 - 최대한 도로 바깥쪽으로 걷고, 도로 안쪽으로 너무 가까이 걷지 않도록 주의
 - 차량이 오는 방향을 마주보며 걷기(다가오는 차량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 4) 도로 횡단 금지 구역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기
 - 곡선구선: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름
 - 주차된 차량 사이: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 있고, 갑자기 나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

3. 안전한 보행 습관

- 1)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 스마트기기에 몰입해 도로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
 - 보행자와 시설물과의 충돌
 -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충돌
 - 보행자와 보행자와의 충돌
 - 주위를 살피기 어려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절대 사용하지 않기
- 2) 이어폰 사용주의
- 보행 중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짐
- 3) 반사재 옷 착용
- 어두운 시간대, 비오는 날에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한다.

4. 등·하교 시 안전한 길 찾기

- 1) 안전한 통학로 선택
- 차량 통행이 적고, 인도가 잘 마련된 안전한 길을 선택
- 2) 친구와 함께 다니기
-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함
- 3) 위험한 장소 피하기
- 공사 현장, 유흥가, 인적이 드문 골목 등 위험한 장소를 피해 다니기
- 4) 낯선 사람과 접근 대처법
- 안전 거리: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일정 거리를 유지
 - 안전한 장소로 이동: 사람이 많은 곳이나 가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 도움을 요청: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 또는 "이 사람이 저를 따라와요!"
 - 정보 제공 금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 5) 길을 잃었을 때 대처법
- 주변 확인: 주변에 있는 건물, 표지판 등을 확인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찾기: 경찰관, 은행, 상점 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
 - 연락 수단 활용: 휴대폰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전화.
휴대폰이 없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
 - 위치 공유: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기다리기
예를 들어, "OO 가게 앞" 또는 "OO 공원 근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다리기

5.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안전 거리 유지

- 1)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다가올 때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
 -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 2) 버스 및 대형 차량
- 버스를 탈 때는 정류장에서 질서를 지키며 대기
- 3) 사고 발생 시 대처법
-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

05강 - 어린이의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1. 학습목표

- 1)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2) 어린이에게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2.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

- 1) 어린이는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
 - 어린이는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움
 - 모든 주의를 자신들의 관심영역에만 한정 시킴
 -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도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도로를 건널 때 주위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들 수 있음
- 2)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버스에 가려서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있음
- 3) 잘 보이지 않고, 구석진 곳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
 - 차 뒤, 으슥하고 좁은 공간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노는 것을 좋아함
 -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차가 후진을 한다거나 혼자 떨어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함
- 4)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가 강해 옳지 않은 행동까지 모방하는 경향이 있음.
 - 부모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행동을 보이면 이후 그 행동을 모방할 수 있음.
 -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음
- 5) 기분이나 감정이 변하는 대로 행동하는 충동성이 강하다.
 - 어린이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들뜬 기분일 때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함.
 - 부모에게 꾸중을 듣거나 하던 일을 제지 당하면 곧 침울해지고 과잉행동을 함.
 - 이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접근하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됨
- 6) 자동차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와 거리·속도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 어린이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지 못함
 -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부족
 - 자동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손만 들면 차가 멈춘다는 생각을 함
 - 이는 도로를 건널 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7)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

- 어린이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음

이는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이 높음

- 교통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음

-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무시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음

8)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

-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 함

도로에서 운전자가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도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놀이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음

3. 교통안전 교육 방법

1) 이야기하기

-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나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

•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나,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시청각 자료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음

•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노래

-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즐겁게 교통 규칙을 학습할 수 있음

- 어린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

4) 게임과 놀이

- 예) '안전한 길 찾기'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의미를 학습할 수 있음

4. 실제 훈련 방법

1)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보는 실습을 진행

• 어린이들이 신호등을 잘 관찰하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

2) 안전체험관 방문

- 다양한 실제 상황을 재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

• 가상현실 체험(VR), 자전거 안전 체험, 스쿨존 체험, 횡단보도 체험 등 이론적인 교육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음.

06강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사고예방

1. 학습목표

- 1) 통학버스 운영 및 사고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통학버스 사고예방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통학버스 운영 기본 지침

- 1) 어린이 통학버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매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2)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

-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상시 단속 대상
-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는 키가 작아 시야가 제한되고, 반응속도가 느림
- 어린이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춤,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운전함

- 4) 안전한 승·하차 준수

- 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만 승·하차를 허용
-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주변 차량과의 거리 유지

3. 통학버스 운전자 행동요령

- 1) 운행 전

- 운행 매뉴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 차량 앞뒤 사각지대 어린이 확인
- 2) 운행 후
-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

4.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행동요령

1) 차에 오를 때

-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및 안전띠 매주기
 -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
- 2) 운행 중일 때
-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주기
 -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
- 3) 차에서 내릴 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및 사고예방

- 안전한 정지를 확인 후 안전띠 풀어주기
-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살피고, 보호자에게 인계
-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Sleeping Child Check)

4) 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

① 통학버스 **시동이 꺼진 후**, 음악 소리가 나오면 이를 끄기 위해
뒷자석으로 이동하여 버튼을 눌러야 함

② 이때 뒷자석으로 이동하며 **잠들어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4. 통학버스 사고예방

1) 차량 내 갇힘 사고 예방 수칙

- 차량에 남아있는 어린이 여부 중복 확인(차량 종사자와 교직원)
 - 등교시간 신속한 출결관리 및 조치
 - 평소 지각하는 아이도 반드시 학부모 연락
 - 차량 내 갇혔을 때 경적 울리기 교육 및 실습
 - 차량 및 안전운행 체크리스트 매일 확인
- 2) 차량 내 갇혔을 때 행동요령
- ① 안전띠를 혼자 푸는 방법을 알려준다.

- ② 도와줄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창문에 붙어 주위를 살피게 한다.
 - ③ 사람을 발견 시 클락션을 누르거나, 창문을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3)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제51조)
-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차로의 바로 옆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07강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1. 학습목표

- 1) 교통사고 발생 시 차분하게 사고 현장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2)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다.

2. 사고 발생 초기 대응 – 사고 발생 직후 해야 할 일

1) 차량 정지

- 안전한 장소 선택: 사고가 발생한 즉시, 차량을 가능한 한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킴. 이때 급하게 움직여 추가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
 - 엔진 정지: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함
 - 대피 준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
- 2) 비상등 점등 및 삼각대 설치
- 비상등 점등: 차량을 정지한 후 즉시 비상등을 킁.

이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

- 안전한 장소로 이동: 부상이 없는 어린이들은 차량에서 내려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킴. 이때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주의
- 차량 내 대기: 만약 도로 상황이 매우 위험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차량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

3) 어린이들 안전 확인

- 부상 여부 확인: 어린이들의 몸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구조 요청.
 - 부상 정도에 따라 어린이들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음.
- 차량 후방에 비상 삼각대를 설치.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후방 100m, 일반 도로에서는 50m 지점에
- 야간 및 악천후 대비: 반사 조끼를 착용하거나 추가적인 경고등을 사용

3. 사고 후 처리 및 보고

1) 사고 현장 변경하지 않기

- 현장 유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 차량의 위치, 파손된 물품, 도로에 남은 혼적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 차량 이동 제한: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 최소한의 이동만으로 사고 현장을 보존. 특히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 것

- 안전 확보 후 이동: 만약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있어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사진 촬영 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함.

2)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

- 다각도 촬영: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차량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 주변 환경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
- 세부 사항 촬영: 차량의 번호판, 파손된 부품, 도로 표지판, 신호등 등을 세부적으로 촬영. 특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함.
- 시간 및 장소 기록: 사진 촬영 시 시간이 기록되도록 설정하거나, 별도로 촬영 시각과 장소를 기록해 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음

3) 목격자 확인 및 연락처 기록

- 목격자 확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함. 목격자의 진술은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임.

이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술이 필요할 때 중요

- 목격자 진술 확인: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녹음해 둠.
- 연락처 기록: 목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연락처를 기록.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음.

4) 블랙박스 자료 확인

- 사고 직후 확인: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함.
- 영상 저장: 블랙박스 영상을 별도의 저장 장치(예: USB, 외장 하드)에 백업.

이는 원본 영상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영상 보호: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거나 SD 카드를 제거하여 사고 당시의 영상이 덮어쓰여지지 않도록 보호.

-블랙박스가 계속 녹화되면 중요한 사고 영상이 삭제될 수 있음

5) 블랙박스 자료 제공

- 경찰 및 보험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하여 사고 조사에 협조 함. 이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됨.

- 목격자와 공유: 필요하다면 사고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 당시 상황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음.

6) 학교에 사고 상황 보고(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에 연락을 취해야 함)

- 사고 발생 시간: 예) "오전 8시 15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발생 장소: 예) "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상황: 예)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부상 여부: 예) "몇몇 학생들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응급조치: 예) "119에 구급차를 호출했고, 학생들은 안정된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08강 - 자전거 안전운전

1. 학습목표

- 1) 자전거 안전 장비의 중요성과 올바른 착용 방법을 이해한다.
- 2) 자전거 도로 규칙과 신호를 준수하는 방법을 배운다.
- 3)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전략을 습득한다.
- 4) 자전거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익힌다.

2. 자전거 안전 장비 사용하기

- 1) 헬멧 착용의 중요성 및 올바른 착용방법
 - 자전거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머리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헬멧은 머리에 꼭 맞아야 하며, 이마 중앙에 위치
 - 헬멧의 띠는 귀 아래 부분에서 'V' 모양이 되도록 조절
 - 헬멧과 턱 사이의 띠는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임
 - 2)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추가 보호 장비
 -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는 넘어졌을 때 관절 부상을 방지.
 - 이러한 보호 장비는 특히 초보자나 어린이에게 유용함
 - 3) 반사 조끼
 - 4) 라이트
 - 어두운 시간대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시야 확보와 가시성을 높여줌
 - 5) 벨
 -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이용자에게 접근을 알리는 데 사용
- 특히 혼잡한 지역에서 중요한 안전 장치

3. 도로 규칙 및 신호 준수

- 1) 자전거 도로 이용 규칙 및 자전거 전용 도로의 중요성
 -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하며, 속도를 조절해 다른 자전거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함
 -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의 가장자리 이용
- 2) 교통 신호 및 표지판 준수의 중요성
 - 모든 교통 신호와 표지판은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녹색불일 때만 이동해야 하며, 정지 표지판에서는 반

드시 멈춤

-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음

3) 수신호 사용법 및 양보 규칙

- 좌회전: 왼손을 수평으로 뻗는다.
- 정지: 왼손을 45도 아래로 내립니다.
- 우회전: 왼손을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 앞지르기: 왼손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든다.
- 서행: 왼손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4. 주요 상황별 안전 운전 방법

1) 버스 또는 대형차 주변

- 멈춰서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림
- 대형차 옆을 지날 때 바람에 의해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차가 진행 후 통행

2) 폭이 좁은 도로

- 자동차가 다가오는 경우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림
- 차가 뒤에서 올 경우 차량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차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

3) 내리막길

- 페달을 밟지 않고 바퀴 스스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함
- 앞 브레이크보다 뒤 브레이크를 먼저 사용

4) 사각지대 인식 및 주변 차량, 보행자와의 거리 유지

- 차량의 사각지대는 특히 위험하므로, 트럭이나 버스 옆을 지날 때는 더욱 주의
-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의 거리를 유지

5) 자전거 끌고 가기

• 도로나 건널목을 건널 때

-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함
-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됨

• 보도를 통행할 때

- 보도의 오른쪽으로 자전거의 오른편에서 주변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끌고 감

6) 날씨 및 도로 상황에 따른 주의사항

- 비가 오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고, 급정지나 급회전을 피해야 함
- 눈이 쌓인 도로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피하고, 도로가 얼어 있을 때는 특별히 주의

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5.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

1) 주의표지

- 주의나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판
- 삼각형의 노란 바탕위에 빨간색 테두리를 두른 모양

134
자 전 거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에 대한 주의

2) 규제표지

-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을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 원형, 역삼각형, 팔각형 등 다양한 모양에 흰색 바탕에 빨간테 두리를 두르거나 빨간색 바탕에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표시

210
자전거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에 대한 규제

3) 지시표지

-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알려 따르도록 하는 표지판
- 원형사각형, 오각형 등 다양한 모양에 파란색 바탕 위에 흰색 글씨나 기호로 지시하는 내용을 표시

302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

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임을 지시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 행 구 분



자전거와 보행자가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

318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량과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자전거 도로를 지시

325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

333
자전거나란히
통 행 허 용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

09강 - 교통안전법 핵심 정리

1. 학습목표

- 1) 교통안전법의 기본 구조와 주요 조항을 학습하여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2) 교통안전법 준수가 왜 중요한지,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개인적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법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2. 총칙(제1장)

1) 목적(제1조)

-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제2조)

-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 「해사안전기본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여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등의 의무(제3조)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 교육 · 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의 의무 (제4조)

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연구하여야 한다.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7조)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 · 해상조건 · 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 운항을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지(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 전 확인 및 항행 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 운항을 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의무 (제8조)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정책 심의기구(제2장)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12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제13조)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 · 군 ·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 · 군 · 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제3장)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5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 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 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7.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계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 행정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 방안
12. 그밖에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제4장)

- 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2조)

①국가 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계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3조)

①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 등의 확보 (제24조)

① 국가 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운전자 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 체계의 개선, 운전자 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제25조)

국가 등은 기상 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기상 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제26조)

국가 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통질서의 유지 (제27조)

국가 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안전운송(제28조)

국가 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 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29조)

① 국가 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의 적정화 (제30조)

국가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제5장)

- 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49조)
 -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해당 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 항에도 불구하고 제2 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제50조)
 - ①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제36조):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 사고(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 ②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掌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행기록장치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 교통안전법 시행 규칙[별표 4]

위치추적장치, 기억장치, 이동식 저장장치유선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운행상태 확인장치, 운행기록보안장치, 그 밖의 장치

-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제56조의 2)

①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수 있는 교통 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강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해

1. 학습목표

-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종류

-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이동수단
 - 최고 속도 25Km/h,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1~2인 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이 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원인

-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법 운행(전동 킥보드)
 - 안전모 미착용
 - 주행방향 미준수 운행(역주행)
 - 탑승 인원 미준수

개인형이동장치(PM)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22-'21)
안전모 착용률	8.9%	26.3%	19.2%	↓ 7.10%p
주행방향 준수율 (역주행 여부)	87.3%	87.5%	94.3%	↑ 6.80%p
탑승 인원 준수율	95.9%	96.3%	92.7%	↓ 3.60%p

- 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2020년~2022년)

- 3)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 주행 구간 및 유형(2021년~2023년)

- 위험 주행 구간: 학교(초·중·고), 대단지 아파트, 대학가, 상업 지역

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2020년~2022년)

(출처: 도로교통공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	897	1,735	2,386
사망자수	10	19	26
19세 이하 가해자	317(28.08%)	599(34.52%)	678(28.42%)

- 위험 주행 유형: 급가속 후 급감속(92.1%), 고속 주행 후 급정지(7.3%), 급가속 후 급정지(0.5%) 순

4)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위험 요인

- 지정된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
-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주행 중 휴대폰 사용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준수

- 음주운전 금지: 음주 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최대 징역 15년)하게 처벌
-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 자리로 주행
- 무면허 운전 금지: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
- 탑승 인원 준수: 전동 킥보드는 1인용 수단임, 2인 이상 탑승 금지
- 지정된 도로 주행: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으로 인도 주행 금지 준수
- 안전모 등 보호장비 필수 착용: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 횡단보도 주행 금지: 내려서 끌고 이동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핸들 등 점검
-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켜고, 가급적 밝은색 옷 착용

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수칙

- 급가속, 급감속, 급제동 등 금지
- 도로 교차 지점에서는 일시 정지 및 서행 운전
- 충전 완료 시 단자 분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점검 및 유지 보수

1) 정기적인 점검

- 타이어 점검

-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

- 마모된 타이어는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

-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 주행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브레이크 점검

-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레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었으면 즉시 교체

- 브레이크 케이블이 느슨해지거나 손상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조정

- 전기 시스템 점검

- 배터리 연결 상태와 전기 배선의 상태를 확인.

- 느슨하거나 손상된 배선은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

- 라이트 및 기타 전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 프레임 및 주요 부품 점검

- 프레임에 금이 가거나 변형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리

- 핸들, 페달, 체인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 필요한 경우 윤활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유지

- 2) 유지 보수 방법

- 청소

- 이동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와 오염물을 제거.

- 특히, 전기 부품과 배터리 주변은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

- 물티슈나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프레임과 주요 부품을 닦아줌

- 윤활

- 체인과 기어 등 움직이는 부위에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함

- 윤활제는 일정 주기마다 다시 빌라주는 것이 좋음

6.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터리 관리

1) 배터리 충전 및 관리 방법

- 충전

- 배터리를 규칙적으로 충전하여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함.

-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음.

- 제조사가 권장하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

- 비호환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충전할 때는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전

- 보관

-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약 50% 정도 충전된 상태로 보관.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보관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음.

- 배터리를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극한의 온도(너무 뜨겁거나 추운 곳)에서는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음

2)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

- 부분 충전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

- 20~80% 범위 내에서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 연장에 도움

- 온도 관리

-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할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너무 뜨겁거나 추운 환경에서의 사용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정기적인 사용

-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

11강 -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1. 학습목표

- 1) 졸음운전이 사고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졸음운전의 위험성

- 1) 졸음운전 사고 현황

- 졸음운전 교통사고 현황(2020~2022년) 출처: 경찰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건수	2,215	1,823	1,849
사망자수	64	55	49
부상자수	4,032	3,378	3,538

- 지난 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5,887건, 하루 평균 5.37건 발생
- 일반국도 사고건수 1,055건(17.9%), 사망자 50명(29.8%)
- 고속도로 사고건수 434건(13.6%), 사망자 34명(20.2%)
- 2) 사고 발생 위험
 - 반응시간 지연: 졸음운전 시 반응시간이 크게 느려진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앞차가 급정거할 때 졸음운전 중인 운전자는 제때 반응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도로 상황 인식 능력 저하: 졸음운전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도로 표지판, 신호등,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증가 한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식 능력 저하가 치명적일 수 있다.
 - 주의력 분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 도로 위의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장애물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대처가 늦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3) 치명적인 결과
 -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 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다중 추돌로 번지며,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 위협

졸음운전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특히, 대형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경우, 소형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졸음운전 사고는 생존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져 일상 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졸음운전의 징후

- 자주 눈을 깜빡이거나 눈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
- 자주 하품을 한다.
- 도로와 주변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 차선 유지를 어려워하거나 차량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3. 졸음운전의 예방대책

1) 충분한 수면

- 장거리 운전 전날 밤에는 과음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이는 운전 중 졸음과 피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수면 부족은 반응 시간을 늦추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 평소에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 리듬이 안정되어 졸음운전을 예방

2) 규칙적인 휴식

-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운전은 근육 경직과 피로를 유발하므로,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
- 휴식 시간에는 차량에서 내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해소하여 졸음을 예방에 도움을 준다.

3) 동승자와 대화

- 동승자가 있을 경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졸음 예방에 효과적이다.
대화는 정신을 깨어 있게 하고,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된다.
- 동승자가 없다면,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졸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차내 공기 환기

- 차량 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내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한다.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졸음을 예방하는 데 도움
-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할 때도 외부 공기 유입 모드를 활용하면 좋다.

5) 졸음 쉼터 이용

-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피로를 풀고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 졸음이 심할 경우, 졸음 쉼터에서 단기 수면(10~20분)을 취하는 것이 좋다.
짧은 수면은 졸음을 쫓고, 신선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12강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1. 학습목표

- 1)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음주운전의 위험성

- 1) 음주운전 사고 현황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20~2023년) 출처: 경찰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수	17,247	14,894	15,059	13,042
사망자수	287	206	214	159
부상자수	28,063	23,653	24,261	20,628

- 지난 4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60,242건, 하루 평균 41.3건 발생
- 2022년 사고건수 15,059건 대비 2023년 13,042건으로 감소
- 사망자수는 214명에서 159명으로 감소
- 2) 반응 속도 저하

• 음주 후에는 신체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알코올은 중추 신경계를 억제하여 신경 전달 속도를 늦추고, 이는 감각과 운동 기능 모두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갑작스러운 차량의 출현이나 도로 위의 장애물을 인지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 결과,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 3) 판단력 저하

- 알코올은 뇌의 기능을 억제하여 판단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차선 변경 시 주변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는 등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4) 시야 제한

- 음주 상태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을 인지하기 어렵다. 알코올은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주변 시야를 제한하고, 시각 정보 처리 속도를 늦춘다.

이는 특히 야간 운전이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도로나 비가 오는 날씨에서 음주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5) 운동 능력 저하

- 음주는 근육의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차량 조작이 어려워진다.

알코올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근육의 반응 속도를 늦추고, 미세한 조정 능력을 저하시킨다. 핸들 조작, 페달 밟기 등의 기본적인 운전 동작이 부정확해지며, 이는 차량의 방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급작스러운 조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정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지 못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핸들을 부드럽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6) 치명적인 사고 발생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망자나 중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한 반응 속도 저하, 판단력 부족, 시야 제한, 운동 능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임
- 음주운전 사고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3. 음주운전의 법적 처벌

1) 처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 예방대책

1) 대중교통 이용

-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예방 방법임.

모임 때 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

2)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한다

3) 지인에게 도움 요청

- 지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운전을 피한다.

4) 음주 전 계획 수립

- 술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교통수단을 계획하고, 절대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음주 후의 무모한 결정을 피할 수 있다.
- 5) 회사나 단체의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후귀가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는 조직 차원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6) 친구나 동료에게 권유
 - 음주 후 운전하려는 친구나 동료를 적극적으로 막리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권유한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중요함.

5. 종합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
-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고,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는 습관을 기르자

13강 -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수칙

1. 학습목표

- 1)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안전운전 수칙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안전운전의 중요성

- 1) 교통사고 발생 통계
 -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2018~2023년) 출처: 경찰청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8년	217,148	3,781	323,037
2019년	229,600	3,349	341,712
2020년	209,654	3,081	306,194
2021년	203,130	2,916	291,608
2022년	196,836	2,735	281,803
2023년	198,296	2,551	283,799
전년 대비(%)	1,460(0.7)	-184(-6.7)	1,996(0.7)

-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저치
- 2021년 이후 3년 연속 3천명 이하 사망자 수 기록
-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
- 2013년 약 5천여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

3. 안전운전 수칙

1)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 자동차에 탑승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 도로 위의 생명줄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가 좌석에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2018년 9월 28일부터)

2)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법

- 어깨와 골반 뼈가 지나는 곳에 바르게 착용
 - 먼저 엉덩이를 시트 가장 안쪽에 밀착
 - 어깨 벨트는 어깨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허리벨트는 골반을 지나도록 착용

- 임산부는 어깨띠를 가슴과 가슴 사이를 지나도록 착용하고, 허리띠는 배의 가장 아래 부분과 허벅지 사이에 매도록
- 어깨띠는 꼬이거나 느슨하지 않게 조절
 - 착용 후에는 등받이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띠가 꼬이지는 않았는지, 느슨하지 않는지 점검
- 안전벨트가 꼬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꼬여 있는 부분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어린이용 카시트

- 어린이를 위한 카시트 설치는 필수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2018년 9월)
- 카시트는 뒷좌석에 설치
 - 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 등으로 인해 어린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충돌 시 보호: 어린이용 카시트는 차량 충돌 시 어린이의 신체를 보호, 어린이의 체격과 성장 단계에 맞춘 설계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부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안전 벨트의 효과적 분배: 일반 차량용 안전 벨트는 성인 체형에 맞춰져 있어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카시트는 안전 벨트를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분배하여 보호 효과를 극대화

4) 올바른 카시트 설치 방법

- 제조사 지침 준수
 - 카시트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사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지침을 따른다.
 - 각 카시트마다 설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 후방 장착 요령
 - 각도 조절: 영아용 카시트는 후방 장착 시 적절한 각도로 설치(보통 45도 각도) 이는 영아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전방 장착 요령
 - 확실한 고정: 카시트를 차량 시트에 단단히 고정
 -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후 손으로 흔들어 확인
 - 안전 벨트 위치: 벨트가 어린이의 어깨와 가슴을 올바르게 감싸도록 위치를 조정
 - 벨트가 어린이의 목이나 복부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

5)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란 운전 중 앞차와의 거리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의미하며, 이는 도로 상황, 차량 속도, 날씨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비, 눈, 안개: 악천후 시에는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더 많은 거리를 유지

- 보통 안전거리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좋다

6) 안전거리 유지 방법

- 2초 규칙: 일반 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2초 간격으로 유지

예를 들어, 앞차가 특정 지점을 지나갈 때부터 자신이 그 지점을 지나갈 때까지 2초가 걸리도록 함

- 3초 규칙: 고속도로에서는 3초 간격을 유지, 속도가 빠를수록 반응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

- 저속 주행 시: 시내 도로에서는 시속 30~50km의 속도에서 2초 규칙을 적용

- 고속 주행 시: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일 때 3초 이상 간격을 유지

7) 안전거리 유지의 필수성

-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운전 수칙

이는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8) 지속적인 실천과 교육

-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은 지속적인 실천과 교육을 통해 강화

운전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준수해야만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

9) 사회적 인식 제고

- 안전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10) 차량 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규정

-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 차선이탈, 신호위반, 급제동 등

11) 주의 분산 요소 최소화

-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않도록 정돈.

특히, 운전석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동승자와의 대화는 운전 중 주의 분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음

- 장시간 운전 시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예방

- 졸음 운전은 매우 위험하므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것이 좋음

12)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교차로는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 교차부를 통과하는 교통체계다. 일반교차로 보다 자동차 간 혹은 자동차와 보행자 간 부딪힘이 적고, 교차로 내 감속 운행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 2022년 국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총 1,402건, 10년 전인 2013년(593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4. 출발 전 차량 세팅 하기

1) 시트 조절

- 앞뒤 위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질 정도로 시트를 조절
- 시트 높이: 도로와 계기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시트 높이를 조절
시트가 너무 낮으면 시야가 제한, 너무 높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수 있음
- 등받이 각도: 등받이는 약 100~110도 정도로 약간 기울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
너무 직각으로 세우면 장시간 운전 시 피로가 쌓일 수 있음.

2) 룸미러 조절

- 중앙 정렬: 룸미러를 조절하여 뒷유리 중앙 부분이 룸미러 중앙에 오도록 맞춤.
이는 후방 시야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
 - 높이 조절: 후방 차량 또는 다른 장애물이 잘 보이도록 상하 위치를 조정
 - 정기적인 청소: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나 오염물질이 없는 상태를 유지
- ##### 3) 사이드미러 조절
- 좌우 위치: 가로(수평)로 2등분하여 하늘과 지면이 각각 반씩 보이게 조절.
차체의 일부분이 보이도록 함.
 - 상하 위치: 도로가 미러의 약 2/3를 차지하고, 하늘이 1/3을 차지하도록 조절
 - 차량 후진 시: 후진할 때는 사이드미러와 후방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양쪽의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을 확인.

14강 - 교통사고 위험 예방과 방어운전

1. 학습목표

- 1)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 2) 방어운전의 개념과 중요성을 학습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2.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운전자의 부주의

1) 스마트폰 사용

- 위험성

- 주의분산: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각, 청각, 인지적 주의가 분산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음

- 반응 시간 지연: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느려져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짐

- 예방 방법

- 운전 중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사용하거나,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

2) 라디오 조작

- 위험성: 라디오 조작 중 시선을 도로에서 돌리게 되어 주의가 분산되고, 사고 위험이 증가

- 예방 방법: 운전 전 라디오를 미리 설정하거나, 스티어링 휠에 부착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조작

3) 음료 섭취

- 위험성: 운전 중 음료를 섭취하면 한 손이 바빠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 예방 방법: 운전 전이나 휴식 시간에 음료를 섭취하고, 운전 중에는 가능한 한 음료 섭취를 피함

4) 기타 요소

- 위험성: 네비게이션 조작, 화장, 음식 섭취 등 다양한 행동이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음

- 예방 방법: 운전 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전 중에는 도로 상황에만 집중. 필요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필요한 행동을 함.

2.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속 및 신호 위반

1) 과속

- 위험성

- 반응 시간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가 위험 상황에 대처할 시간이 줄어듬

- 충돌 시 피해 증가: 과속으로 인한 충돌은 더 큰 피해를 유발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차량 제어 어려움: 과속 시 차량 제어가 어려워지며, 특히 커브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위험이 증대

- 예방 방법

-속도 제한 준수: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특히 학교 근처나 주거 지역에서는 속도를 줄임.

-속도 조절 장치 활용: 최신 차량에는 속도 제한 장치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2) 신호 위반

- 신호 준수의 중요성

-교통 흐름 유지: 신호를 준수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혼잡을 줄일 수 있음

-사고 예방: 신호를 어기면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커짐

-법적 제재: 신호 위반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차선 변경 및 추월

- 안전한 차선 변경 방법

-사전 신호: 차선을 변경하기 최소 3초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의도를 알림

-사각지대 확인: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

-속도 유지: 차선을 변경할 때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급격한 가속이나 감속을 피함

2.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기상 조건 및 도로 상태

1) 기상 조건

- 비

-속도 줄이기: 비가 올 때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므로 속도를 줄여 운전

-와이퍼 점검: 와이퍼가 잘 작동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

-안개등 사용: 시야 확보를 위해 안개등을 켜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

-수막 현상 인지: 바퀴가 노면을 제대로 접지하지 못한 채 물 위에 뜬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수막 현상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니, 조향장치의 급격한 조종이나 급브레이크를 막지 않도록 주의

- 눈

-겨울용 타이어: 겨울철에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

-체인 장착: 눈이 많이 쌓인 도로에서는 체인을 장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속도 줄이기: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

-급가속 및 급제동 피하기: 서서히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미끄러짐을 방지

- 안개

-저속 운전: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가 제한되므로 속도를 줄여 운전

-안개등 사용: 안개등을 켜서 자신의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함

-차선 유지: 차선을 잘 확인하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도로 이탈을 방지

-경적 사용: 필요한 경우 경적을 울려 자신의 위치를 알림

-비상등 사용: 비상들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

2) 도로 상태

- 공사 구간

-주의 표지판 확인: 공사 구간에서는 주의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지시를 따름

-속도 제한 준수: 공사 구간에서는 속도 제한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

-작업자 주의: 공사 구간에서는 작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운전

- 포트홀(도로에 움푹 패인 곳)

-포트홀 피하기: 포트홀이 있는 도로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 포트홀을 피함.

-속도 줄이기: 포트홀이 많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 충격을 최소화

-타이어 상태 점검: 포트홀 구간을 통과한 후 타이어 상태를 점검

3. 방어운전

1) 방어운전의 정의와 목적

- 정의: 방어운전은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행을 유지하는 운전 방식

- 목적: 방어운전의 주된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도로 위의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2) 방어운전의 기본 원칙

- 상황 인식

-주변 환경 파악: 도로 상황, 날씨, 교통량 등을 항상 주시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

-다른 운전자 예측: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주의

- 안전 거리 유지

-앞차와의 거리: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급정거 시에도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함.

-측면 및 후방 거리: 차선 변경 시나 주행 중에도 옆 차량 및 뒤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

- 속도 조절

-도로 상황에 맞는 속도 유지: 도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날씨,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유지

- 교통 신호 준수: 교통 신호와 표지판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실천
- 예측과 대비
- 잠재적 위험 요소 인지: 도로 위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
예를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임.
- 긴급 상황 대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브레이크와 핸들 조작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앞차가 급정거할 때를 대비해 발을 브레이크에 가까이 둠



15강 - 차량 화재 시 대응방법

1. 학습목표

- 1)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2)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을 습득한다.
- 3) 화재 진압 방법 및 진압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차량 화재의 원인

- 1) 기계적 원인
 - 엔진 과열, 전기 배선 문제, 연료 누출 등
- 2) 인적 요인
 - 운전 중 흡연, 불법 개조, 차량 내 가연성 물질 방치
- 3) 외부요인
 - 교통사고, 방화 등

3.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 1) 안전한 장소로 이동
 -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나 주차장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주행 중일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한 장소를 찾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이동한다.
 - 교차로나 터널 내에서는 즉시 멈추고 비상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경고
 - 교차로나 터널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는 즉시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 주위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차량 화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내어 경고할 수도 있다.
 - 2) 엔진 정지 및 전원 차단
 - 즉시 엔진을 끄고 차량의 전원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전기적 화재를 방지
 - 차량을 멈춘 후, 즉시 엔진을 끄고 차량 키를 뽑아 전원을 차단한다.
 - 전기적 시스템의 작동을 중단시켜 추가적인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 3) 차량에서 신속히 탈출
 - 차량 내 모든 승객이 신속히 차량에서 나와 안전한 거리(최소 30m)로 이동
 - 차량 화재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 4) 119에 즉시 신고하고, 차량의 위치와 화재 상황을 정확히 알림
 -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즉시 119에 전화하여 화재 상황을 신고한다.
 - 정확한 차량 위치, 차량의 종류 및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거리에서 대기하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신고하여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4. 소화기 사용 방법

1) 소화기 위치 확인

- 차량 내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
- 소화기가 없는 경우, 차량 내 비치할 것을 권장
 - 현재 7인승 이상 뿐 아니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2024년 12월 1일부 제작·조립·수입·판매, 소유권 변동 차량 부터 적용
- 마트,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2)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꺼내 바닥에 놓고,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
-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한 후 압력 레버를 눌러 분사
- 불이 난 부분을 골고루 덮으며 진화

3) 소화기 사용 시 주의사항

- 불이 크게 번진 경우 소화기로 진화 시도하지 말고 즉시 대피
- 차량 내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연료통 근처 화재) 소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대피.

5. 화재 진압 후 조치

1) 화재 진압 후 확인

-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 차량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살펴보며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
 - 특히, 엔진룸, 배터리, 연료 탱크 주변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 차량 주변의 안전을 확보
 - 화재 잔여물이 남아 있거나,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

2) 사고 조사

- 경찰이나 소방서에 사고 경위를 설명
 -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
 - 화재 발생 시의 상황, 초기 대응 방법, 화재 진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
- 차량 화재 원인 조사에 협조
 - 경찰이나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차량 화재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
 - 필요한 경우, 차량의 정비 기록,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제공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움

3) 보험 처리

- 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절차 진행
 - 화재 진압 후, 즉시 차량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 사고 발생 시간, 장소, 화재 원인,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
- 필요한 서류 및 증빙 자료 준비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 차량 등록증, 사고 현장 사진, 경찰 및 소방서의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준비
- 보험 처리 진행 상황 확인 및 협조
 - 보험 처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공하여 처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
- 필요 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리비 견적,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조율

6. 차량 화재 예방 방법 및 실천 사항

1) 정기적인 차량 점검

● 엔진 및 연료 시스템 점검

- 정기적으로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점검하여 누유나 손상된 부품이 없는지 확인
- 특히, 연료 라인, 연료 필터, 연료 탱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상 유무를 점검

● 전기 시스템 점검

- 배터리, 전기 배선, 퓨즈 박스 등 전기 시스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배선이 노후 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

2) 안전 운전 습관

● 과속 및 난폭 운전 자제

- 과속, 난폭 운전은 엔진 과열 및 부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속도를 준수
-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을 피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운전 습관을 유지

● 운행 전 차량 상태 확인

- 차량 주변을 살펴보며, 누유, 타이어 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작동 여부 등을 확인
- 차량 내부의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지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